

「 변경 대비표 」

- 펀드명 : 유진 G-BEST 증권투자신탁(주식)
- 작성기준일 : 2015년 03월 29일
- 효력발생일 : 2015년 04월 08일
- 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내역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p>가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박순엽</p> <p>※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이 담당하며,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·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.</p> <p>나.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간 변경내역</p>	<p>가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최 준</p> <p>※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,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·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.</p> <p>나.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간 변경내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></p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산신탁의 투자대상]</p> <p>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<추가></p>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산신탁의 투자대상]</p> <p>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</p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></p>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투자위험등급 기준 변경>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<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>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	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></p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	<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>
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	<p>5. <신설></p>	<p>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: 해당사항 없음</p>
6.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	<p>5.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</p>	<p>6.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</p>

■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내역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1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
5. 운용전문인력	박 순 업	최 준
6. 투자실적 추이(세전기 준)		<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>

■ 집합투자규약 변경내역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<p>①투자신탁을--<생략>--보고하여야 한다. 1~4. <생략> 5. <신설></p> <p>②~③ <생략></p>	<p>①투자신탁을--<생략>--보고하여야 한다. 1~4. <생략> 5.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②~③ <생략></p>